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치안분야 국제 공조·협력 강화를 위해 경찰청 국제협력관을 평가대상조직인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개편하고, 국제치안협력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 중 1명은 소속기관의 정원 1명(치안감 1명)과 경찰청 정원 1명(경무관 1명)을 상호이체하여 배정하며, 5명(경감 1명, 경위 4명)은 증원하고, 경찰청 치안정보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며,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에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의 총괄·조정에는 필요한 인력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7급 1명), 경찰청 형사국에 중대재해 수사 지휘에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 디지털 홍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경위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경찰청 수사국에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총경 1명, 경정 2명)을 증원하며, 전자통신금융사기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및 그 밑에 두는 데이터분석담당관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각각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중 4명(경무관 1명, 총경 1명, 경정 2명)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8명(총경 2명, 경정 3명, 5급 3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되, 8명 중 3명(5급 3명)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경찰청의 수사 전문성 제고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10명(경정 6명, 경감 19명, 경위 23명, 경사 24명, 경장 26명, 순경 12명)을 경찰청으로 이체하고, 신원조사 내실화를 위해 경찰청 치안정보국 행정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소속기관의 경찰 인력 2명(경사 1명, 순경 1명)과 상호 이체하며, 경찰청 자치경찰제도 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 2명(경감 1명, 경위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초국가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기도 남부경찰청의 광역수사단에서 국제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면서 국제공조 사무에 필요한 인력 18명(경감 5명, 경위 11명, 경사 2명)을 증원하고,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를 5개 추가하여 총경 5명의 직급을 경무관으로 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중 중대재해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4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악성사기 추적수사를 전담하는 인력 78명(경감 22명, 경위 22명, 경사 22명, 경장 12명), 관계성범죄 대응 인력 37명(경위 9명, 경사 19명, 경장 9명)을 각각 평가대상으로 하여 증원하며, 경찰서 정보활동 강화에 필요한 인력 57명(경정 57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에 설치한 한시조직인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

관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찰청 형사국과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이 종료되어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된 시·도경찰청의 수사지원 업무 인력(41명), 과학수사 업무 인력(228명),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 인력(225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이 종료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전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치안정보국”을 “치안정보국·국제치안협력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관·경무인사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을 “기획조정관 및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사업의 총괄·조정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국제치안협력국) ①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2.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3.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4. 사기, 마약, 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 대응 관련 외국·국제기구와의
공조 및 정보 수집·분석·전파
5.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 및 지원 업무

제17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사이버테러(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 위협을 말한다) 대응에 관한 사항

제20조제3항제1호 중 “폭력범죄”를 “폭력범죄, 실종사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및 실종사건”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사건”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과학수사 등 수사기법 연구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무 총괄

제22조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제32조제3항 중 “치안감”을 “경무관”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별표 3과 같다”를 “20개를 그 상한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 중 “마약·강력”을 “마약·국제·강력”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제52조제2항제6호 중 “성폭력 범죄”를 “성폭력·성매매 사건”으로, “성폭력·성매매”를 “성폭력·성매매 사건”으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 중 “마약·강력”을 “마약·국제·강력”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후단 중 “57명”을 “5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9명”을 “5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중 “630명”을 “6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25명”을 “521명”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한시조직”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둔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라 한다) 대응에 관한 기획 및 정책 수립

2.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관련 예방·홍보

3.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관련 국제공조 활동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신고 접수·상담

5.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6.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관련 수사

7.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에 이용된 범행 수단 분석·차단

④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데이터분석담당관) 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데이터분석담당관을 둔다.

② 데이터분석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데이터분석담당관은 제68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을 보좌한다.

④ 데이터분석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2차가해범죄수사과) ① 경찰청 수사국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둔다.

②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차가해범죄(범죄·재난 등 주요 사건·사고의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등을 말한다) 예방을 위한 기획·연구 및 관련 법령 제정·개정

2. 2차가해범죄에 대한 수사

3. 2차가해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4. 2차가해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연구

5. 2차가해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6. 2차가해범죄 관련 정보 수집·분석

7. 2차가해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지원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④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한시정원) 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

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경찰청에 둔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1,895”를 “2,02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26”을 “1,353”로 하며, 치안감 “11”을 “12”로 하고, 총경 이하 “1,206”을 “1,333”로 하며, 일반직 계 “665”를 “667”로 하고, 4급 또는 총경 이하 “638”을 “640”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301”을 “134,38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853”을 “129,931”로 하며, 치안감 “19”를 “18”로 하고, 경무관 “77”을 “83”으로 하며, 총경 이하 “129,752”를 “129,825”로 하고, 일반직 계 “4,354”를 “4,356”으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4,333”을 “4,335”로 한다.

별표 6 제1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자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국제치안협력국	0명
차. 국제치안협력국 1개 과	0명
카. 치안정보국 1개 과	0명
타. 국가수사본부 1개 과	8명

별표 6 제2호가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0명
---------------------	----

별표 6 제2호나목5)부터 9)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에 15)부터 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중대재해수사 업무(시·도경찰청)	42명
16) 악성사기 추적수사 업무(시·도경찰청)	78명
17) 관계성범죄 대응 업무(시·도경찰청)	37명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

경찰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67조제4항, 제68조제4항, 제69조제4항
및 제70조제4항 관련)

1.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경무관	1

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1
경찰공무원 계	1
경무관	1

3. 데이터분석담당관(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3
경찰공무원 계	3
총경 이하	3

4. 2차가해범죄수사과(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3
경찰공무원 계	3
총경 이하	3

[별표 8]

경찰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71조 관련)

총계	2
경찰공무원 계	2
총경 이하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에 미래치안정책국·범죄예방대응국·생활안전교통국·경비국· <u>치안정보국</u> 및 국가수사본부를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 ----- ----- <u>치안정보국</u> · <u>국제치안협력국</u> ---- ----.
② 경찰청장 밑에 대변인 및 감사관 각 1명을 두고, 경찰청 차장 밑에 <u>기획조정관·경무인사기획관</u> 및 <u>국제협력관</u> 각 1명을 둔다.	② ----- ----- ----- <u>기획조정관</u> 및 <u>경무인사기획관</u> ----- ----.
제9조(국제협력관) ① <u>국제협력관</u> 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u><삭 제></u>
② <u>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u>	
1. <u>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총괄·조정</u>	
2. <u>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u>	
3. <u>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u>	
제10조의2(미래치안정책국) ①·② (생략)	제10조의2(미래치안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③ -----

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제17조(수사기획조정관) ① (생략)

② 수사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

--.

1. ~ 8. (현행과 같음)

9.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사업의 총괄·조정

제15조(국제치안협력국) ①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2.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3.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4. 사기, 마약, 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 대응 관련 외국·국제기구와의 공조 및 정보 수집·분석·전파

5.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 및 지원 업무

제17조(수사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좌한다. 1. ~ 6. (생 략) 7. <u>수사기법 연구 개발 및 개선</u> <u>에 관한 사무 총괄</u> 8. ~ 12. (생 략) 제19조(수사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11. (생 략) <u><신 설></u> 12. (생 략) 제20조(형사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강력범죄, <u>폭력범죄</u> 및 교통 사고·교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 2. (생 략) 3. <u>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u> <u>상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u> <u>대, 학교폭력 및 실종사건에</u>	-----. 1. ~ 6. (현행과 같음) <u><삭 제></u> 8. ~ 12. (현행과 같음) 제19조(수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사이버테러(해킹 등 정보통</u> <u>신망 침해 및 사이버공간에서</u> <u>의 안보 위협을 말한다) 대응</u> <u>에 관한 사항</u>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20조(형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u>폭력범죄, 실종사건</u> ----- ----- 2. (현행과 같음) 3. <u>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u> <u>동학대 및 학교폭력 사건</u>----- -----
--	---

관한 수사 지휘·감독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 4. ~ 8. (생략) <u><신설></u>	----- -----
제22조(안보수사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u><신설></u>	4. ~ 8. (현행과 같음) 9. <u>과학수사 등 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무총괄</u>
제22조(안보수사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u><신설></u>	제22조(안보수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처리</u>
제32조(원장 및 교장) ①·② (생략) ③ 경찰수사연수원장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u>치안감</u>으로 보한다.	제32조(원장 및 교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경무관</u>----- -----.
제42조(경찰서) ①·② (생략)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되,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	제42조(경찰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하는 경찰서는 <u>별표 3과 같다.</u>	----- <u>20개를 그 상한으</u> <u>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u> <u>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제49조의2(광역수사단) ① (생 략) ② 단장은 부패·공공·경제· <u>마약·강력·조직 범죄 등 주요</u> <u>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u> <u>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u>	제49조의2(광역수사단) ① (현행 과 같음) ② ----- <u>마약·국제·강력</u>----- ----- -----.
제50조(안보수사부) ① (생 략)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50조(안보수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u>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u> <u>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u> <u>· 처리</u>
제52조(생활안전교통부) ① (생 략)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5. (생 략) 6. <u>성폭력 범죄의 수사, 아동·</u> <u>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에</u> <u>관한 지도·단속, 성폭력·성</u> <u>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u>	제52조(생활안전교통부) ① (현행 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u>성폭력·성매매 사건</u>----- ----- ----- <u>성폭력·성</u> <u>매매 사건</u>-----

에 관한 업무

7. ~ 12. (생략)

제56조의2(광역수사단) ① (생략)

② 단장은 부패·공공·경제·마약·강력·조직 범죄 등 주요 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7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49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7. ~ 12.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광역수사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마약·국제·강력-----

-----.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59명-----

-----.

③ -----

52명-----
-----.

④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4명(소방령 4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630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④ -----
 ---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625명-----

 -----.

③ -----

및 보좌기관의 정원과 경찰서장의 정원의 합은 525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9장 한시조직

제67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을 둔다.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 521명-----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67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① -----

----- 2027년 12월 31일-----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

응단) 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둔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
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
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
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
기통신금융사기 및 「전기통
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
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
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
(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
죄”라 한다) 대응에 관한 기획
및 정책 수립
2.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관
련 예방·홍보
3.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관
련 국제공조 활동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신
고 접수·상담
5.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6.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관
련 수사
7.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에

<신 설>

<신 설>

이용된 범행 수단 분석·차단

④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
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
표 7과 같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데이터분석담당관) ① 경
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
응단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
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
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
직으로 데이터분석담당관을 둔
다.

② 데이터분석담당관은 총경으
로 보한다.

③ 데이터분석담당관은 제68조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
기 통합대응단장을 보좌한다.

④ 데이터분석담당관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2차가해범죄수사과) ① 경
찰청 수사국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둔다.

②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차가해범죄(범죄·재난 등 주요 사건·사고의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등을 말한다) 예방을 위한 기획·연구 및 관련 법령 제정·개정

2. 2차가해범죄에 대한 수사

3. 2차가해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4. 2차가해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연구

5. 2차가해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6. 2차가해범죄 관련 정보 수집·분석

7. 2차가해범죄 피해자 보호대

<u><신 설></u>	<u>책 수립·지원 및 관련 기관</u> <u>· 단체와의 협력</u> ④ <u>2차가해범죄수사과에 두는</u> <u>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u> <u>다.</u> ⑤ <u>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u> <u>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u>제71조(한시 정원) 제11조제3항제1</u> <u>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수</u> <u>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u> <u>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u> <u>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u> <u>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 정원</u> <u>을 경찰청에 둔다.</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6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895</u>	<u>2,024</u>	+129
경찰공무원 계	<u>1,226</u>	<u>1,353</u>	+127
·	·	·	
·	·	·	
치안감	<u>11</u>	<u>12</u>	+1
경무관	<u>6</u>	<u>5</u>	-1
총경 이하	<u>1,206</u>	<u>1,333</u>	+127
일반직 계	<u>665</u>	<u>667</u>	+2
·	·	·	
·	·	·	
4급 또는 총경 이하	<u>638</u>	<u>640</u>	+2
·	·	·	
·	·	·	

[별표 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4,301</u>	<u>134,381</u>	+80
경찰공무원 계	<u>129,853</u>	<u>129,931</u>	+78
·	·	·	
치안감	<u>19</u>	<u>18</u>	-1
경무관	<u>77</u>	<u>83</u>	+6
총경 이하	<u>129,752</u>	<u>129,825</u>	+73
·	·	·	
·	·	·	
일반직 계	<u>4,354</u>	<u>4,356</u>	+2
·	·	·	
·	·	·	
4급 또는 총경 이하	<u>4,333</u>	<u>4,335</u>	+2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2